

의안번호	제 132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3월 일 (제 298 회)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권기수 의원외 6인
발의 연월일	2011년 2월 25일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기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2월 25일
발의자 : 권기수
김동환 임현경, 이광진
이수완 김재종, 임현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-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제19조를 제41조로 변경

나. 시험수수료(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) 도보 고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(안 제2조)

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(안 제3조, 제4조)

-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1항의 규정에
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

- “시정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정에 필요한”으로 개정.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“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여비조례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정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정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41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충청북도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으로 정한다. ② (생 략) 1. (생략) 2. 여비조례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	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
제3조(징수방법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.	제3조(징수방법) ① 제2조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. 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.
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 소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시정에 필요한 ----- -----.

관련법령 발췌

□ 건설기술관리법

- 제24조(건설공사의 품질관리)**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12.29]

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[국토해양부령 제315호, 2010.12.20, 일부개정]

제41조(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) 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,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. 다만,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,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2.20]

[제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41조는 제72조로 이동 <2010.12.20>]

□ 지방자치법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